



질병관리청

질 병 관 리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1. 귀 기관 및 학·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06호, 2025. 4. 1. 공포 및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의뢰에 따라 확인 검사를 해야하는 확인검사기관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을 추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 여부에 관한 확인검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2025년 4월 1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령 제1106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질 병 관 리 청 장



수신자 각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질병관리청 전부서, 유관 학회 및 협회

보건연구사 **김은영** 보건연구관 **김성남** 에이즈관리과장 **유정희** 전결 2025. 4. 2.

협조자

시행 에이즈관리과-692 (2025. 4. 2.)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에이 / <http://kdca.go.kr>
즈관리과

전화번호 043-719-7917 팩스번호 043-719-7339 / azusa17@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